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안 번호	715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년 3월 29일 이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21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 3월 29일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38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23년 4월 3일 모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상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들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621번)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 (의안번호 638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입법형식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조례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조정 및 병합하여 상호 모순이 없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의 2017년 개정사항을 조례에 연동하여 반영함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올바른 입법형식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춰 조례에 사용된 띄어쓰기, 약칭사용, 문장부호 등을 수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를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시설·장소”를 “시설·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를 “「관광진흥법」 제70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차장법」 제2조”를 “「주차장법」 제2조”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5의2”를 “별표 15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영업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 적) ----- ----- ----- -----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 -----.</p>
<p>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p>	<p>제2조(영업장소) ① <u>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u>----- ----- -----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 ----- “시설·장소”-----.</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p>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p>	<p>2. 「관광진흥법」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p>
<p>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p>	<p>4. -----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p>
<p>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p>	<p>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p>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u>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u></p>	<p><u>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u></p>
<p>6. (생 략)</p>	<p>6. (현행과 같음)</p>
<p>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u>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u></p>	<p>7. 「주차장법」 제2조----- ----- <u>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8. (생 략)</p>	<p>8. (현행과 같음)</p>
<p>9. 그 밖에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u>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p>	<p>9. ----- <u>시장이</u>----- ----- ----- ----- -----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u></p> <p>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u>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u></p> <p>2. <u>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u></p>	
<p>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u>별표15의2</u>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 ---- <u>별표 15의2</u>----- -----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u>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u>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p>	<p>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u>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u></p>

현 행	개 정 안 (대 안)
	<u>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u>각호</u> 의 취업애로 청년	1. ----- ----- <u>각 호</u>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6., 2020. 12. 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17. 9. 21., 2020. 12. 31.>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2017. 9. 21.>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

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위생관리
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2017. 5. 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
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
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
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
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